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국방부와 함께하는 청렴韓 한가위

청탁금지법 추석선물 허용범위를 참고하시어
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

친지,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**친지, 이웃과 나누는 선물**을
제한하지 않습니다.





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

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**5만원 이상**(1회 **100만원까지**)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.
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**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 · 의례 목적**으로
5만원(농수산물 ·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)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.
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 ·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**일체의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**
(예) 인허가 신청 민원인, 지도 · 단속 대상자, 입찰 참가자, 고소 · 고발인, 피의자 등





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

금전,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**5만원 이하라도**
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.

디자인·인쇄_ 국군인쇄창